

## 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

취학아동 성명		취학아동 주민등록번호	
---------	--	-------------	--

2000~2001년 두 해 동안 약 5만 명에 가까운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. 대부분이 만 4~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었으며,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홍역은 2회 접종(만12~15개월, 만4~6세)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,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2회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.

홍역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『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제20조』 규정에 의거하여, 2010년 취학아동은 반드시 입학전에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고, 접종기관이 발급한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입학시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장·군수·구청장



※ 위 통지는 『전염병예방법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』의 규정에 의한 <예방접종 명령서>에 갈음합니다.

### ♣ 학부모 유의사항 ♣

- 만4~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기록이 불확실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-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을 받은 후에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(뒷면)를 발급 받으십시오.
  - 접종 절대 금기 사항으로 접종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: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단 확인을 받으십시오.
- ※ 과거에 홍역을 앓았던 경우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.
- 만4~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경우
  - 반드시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.
  - 접종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방문이 곤란할 경우 : 보건소에서 접종하였던 경우는 ‘거주지 보건소’를,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였던 경우는 취학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‘근처 의료기관’을 방문하여 기록 확인 요청을 하십시오.
  - 접종기관이 폐업 또는 통폐합한 경우 : 접종기관 소재지 보건소나 거주지 보건소의 확인을 받으십시오.
- ※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시에는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 서식과 함께 <모자보건수첩(아기수첩)>과 의료보험카드를 지참하고 가서 확인을 받고, 입학시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를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.

### ♣ 접종기관 유의사항 ♣

- 반드시 기록(의무기록, 예방접종대장, 모자보건수첩 등)에 의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.  
(허위 작성시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)
- 의무기록, <모자보건수첩>등에 접종기록이 없거나 미접종자인 경우는 홍역 예방접종을 권유하고, 접종을 시행한 후 <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>(뒷면)를 발급하여 주십시오.
- 확인 기재 방법
  - 만4~6세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: 접종일, 접종기관 기재 후 확인서명
  - 만4~6세 2차 홍역 예방접종 제외대상인 경우 : 접종 제외 대상(접종 절대 금기)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(✓)
- ※ 타 접종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경우 : 가능한 한 해당 접종기관과 협의하여 접종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.
- ※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‘예방접종등록사업’을 추진·운영하고 있으며, 전산등록된 자녀의 예방접종기록에 한하여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(<http://nip.cdc.go.kr>)에서 조회 및 접종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.

**취학전 홍역예방접종으로 홍역을 퇴치합시다!**